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20

제출년월일 : 2015. 3.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구민의 체육시설 이용욕구를 충족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립 중인 마포구민체육센터의 사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고, 구립체육시설의 위탁기준 및 위탁취소사유 등을 명확히 하여 구민이 구립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립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등을 정비(안 제3조 관련 별표 1)
- 마포구민체육센터의 준공에 따라 명칭 및 위치 등을 신설
- 기존 구립체육시설의 위치를 새주소로 변경

나. 구립체육시설의 사용료 정비(안 제8조 관련 별표 2 ~ 별표 4)
- 조례에서 구립체육시설의 시설과 대상자별 사용료 범위를 규정하고, 규칙에서 사용료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다. 상위 법령에 따라 구립체육시설의 감면기준 정비(안 제11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구립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을 정비

라. 구립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과 위탁의 취소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16조 및 제21조)

- 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되, 방법과 절차 등은 규칙에서 정함
- 규칙에 규정된 위탁의 취소기준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

마. 이해관계인이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고 위원의 제척·회피·기피를 규정하여 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부적절한 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 안 제17조2(위원의 제척·회피·기피) 규정 신설

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개정근거

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나.「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5. 2. 12. ~ 3. 4 (제출된 의견 없음)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2015.3.12)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라.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별표 1""을 "별표 1"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체육시설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제5조제3항 중 "간주한다"를 "본다"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간"을 "주간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사용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체육시설 또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제2호 중 "마포구 체육회 또는 마포구 생활체육회"를 "마포구체육회 또는 마포구생활체육회"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를 "사용료는 원가·물가상승률 및 다른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때에는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 등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감액"을 "감면"으로, "감액사유"를 "감면 사유"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경로우대자 본인"을 "경로우대자"로 하며,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명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중 "수급자 본인"을 "수급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용료의 100분의 80 감면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제11조제1항제3호(종전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용료 전액 면제 : 국가, 서울특별시, 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분의 20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계절별·시간대별 취약 프로그램 이용자

2. 월 2개 이상 프로그램 이용자

3. 3개월 이상 프로그램을 등록하는 이용자

제11조제3항 중 "토·일·공휴일 및 야간"을 "토요일·공휴일 또는 야간"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연장"을 "한 차례만 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다"를 "하며, 위탁의 연장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마포구"를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되, 체육시설의 특성상 면허 또는 경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선정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체육시설 안의 세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소관국장”을 “체육시설업무 소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마포구의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에 대하여”를 “위원에게”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심사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② 심사대상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본인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8조 중 “새로이”를 “새로”로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탁자의 재정상태 악화 등 그 밖의 사유로 체육시설에 대한 수탁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탁자의 사망 또는 수탁법인(단체)이 해산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제2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날짜

를 취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2조(체육시설 운영의 위탁 연장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체육시설 운영의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탁을 최초의 위탁으로 본다.

[별표 1]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제3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기능	위치
염리 생활체육관	종합 체육관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체육 활동 및 행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61(염리동)
	다목적 체육실	요가, 체조, 검도 등 체육활동	
마포구민 체육센터	종합 체육관	농구, 배구, 배드민턴, 핸드볼 등 체육활동 및 행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11길 198 (망원동)
	다목적 소체육관	요가, 체조,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등 체육활동	
	체력단련실	헬스, 체력단련장	
	볼링장	볼링	
망원동 테니스장		테니스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로 2(망원동)
와우산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30길 87 (창전동)
망원동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1길 39 (망원동)

[별표 2]

개인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단위 : 원)

<table>
<tr><th>명칭</th><th>구분</th><th>대상</th><th>사용료</th><th>비고</th></tr>
<tr><td rowspan="3">염리생활
체육관</td><td rowspan="3">종합
체육관</td><td>성인</td><td>2,000 ~ 4,000</td><td rowspan="14">※ 사용료 기준
- 1회 2시간
- 월사용권은 1회 사용료에 20을 곱한 금액 한도 내로 함

※ 성인 만 19세 이상
청소년 만13세 ~ 만18세
어린이 만12세 이하

※ 개인사물함
대 : 5,000원
중 : 3,000원
소 : 2,000원

※ 볼링화 대여 : 1,000원</td></tr>
<tr><td>청소년</td><td>1,500 ~ 3,000</td></tr>
<tr><td>어린이</td><td>1,000 ~ 2,500</td></tr>
<tr><td rowspan="7">마포구민
체육센터</td><td rowspan="3">종합
체육관</td><td>성인</td><td>2,000 ~ 4,000</td></tr>
<tr><td>청소년</td><td>1,500 ~ 3,000</td></tr>
<tr><td>어린이</td><td>1,000 ~ 2,500</td></tr>
<tr><td rowspan="2">헬스장</td><td>성인</td><td>2,000 ~ 4,000</td></tr>
<tr><td>청소년</td><td>1,500 ~ 3,000</td></tr>
<tr><td rowspan="2">볼링장</td><td>성인</td><td>1게임당
2,500 ~ 4,500</td></tr>
<tr><td>청소년
어린이</td><td>1게임당
2,000 ~ 4,000</td></tr>
<tr><td colspan="3">와우산 배드민턴장</td><td>2,000 ~ 4,000</td></tr>
<tr><td colspan="3">망원동 배드민턴장</td><td>2,000 ~ 4,000</td></tr>
<tr><td colspan="3">망원동 테니스장</td><td>3,000 ~ 6,000</td></tr>
</table>

1.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10%를, 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와우산 배드민턴장과 망원동 배드민턴장은 바닥, 바람막음시설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보완할 때까지 사용료를 면제한다.

[별표 3]

전용사용료(제8조 관련)

(단위 : 원)

<table>
<tr><th rowspan="2">명칭</th><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사용료</th><th rowspan="2">비고</th></tr>
<tr><th>체육경기</th><th>일반행사</th></tr>
<tr><td rowspan="2">염리생활
체육관</td><td>종합
체육관</td><td>55,000
~ 100,000</td><td>80,000
~ 160,000</td><td rowspan="5">※ 사용료 기준 :
2시간</td></tr>
<tr><td>다목적
체육실</td><td>15,000
~ 40,000</td><td>30,000
~ 60,000</td></tr>
<tr><td rowspan="5">마포구민
체육센터</td><td>종합
체육관</td><td>100,000
~ 200,000</td><td>200,000
~ 400,000</td></tr>
<tr><td>다목적
소체육관(大)</td><td>30,000
~ 60,000</td><td>60,000
~ 120,000</td></tr>
<tr><td>다목적
소체육관(中)</td><td>15,000
~ 40,000</td><td>30,000
~ 60,000</td></tr>
<tr><td>다목적
소체육관(小)</td><td>10,000
~ 30,000</td><td>20,000
~ 40,000</td><td rowspan="2">※ 사용료 기준 :
1시간, 1레인</td></tr>
<tr><td>볼링장</td><td colspan="2">(체육경기 시)
주중 : 30,000 ~ 50,000
토요일・공휴일 : 35,000 ~ 65,000</td></tr>
<tr><td colspan="2">망원동 테니스장</td><td>10,000
~ 30,000</td><td>-</td><td>※ 사용료 기준 :
1일, 1면당</td></tr>
</table>

1. 일반행사란 체육경기가 아닌 문화, 예술, 교육, 발표 등 그 밖의 행사를 말한다.
2.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10%를, 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3. 음향, 냉난방 등의 사용료는 별도로 한다.

[별표 4]

그 밖의 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사용료		비고
		음향장비	냉난방	
염리생활 체육관	종합 체육관	15,000 ~ 25,000	30,000 ~ 4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4계절 권장온도
	다목적 체육실	10,000 ~ 15,000	10,000 ~ 20,000	
마포구민 체육센터	종합 체육관	15,000 ~ 25,000	40,000 ~ 60,000	
	다목적 소체육관(大)	10,000 ~ 15,000	15,000 ~ 25,000	
	다목적 소체육관(中)	10,000 ~ 15,000	10,000 ~ 20,000	
	다목적 소체육관(小)	10,000 ~ 15,000	5,000 ~ 10,000	

1.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10%를, 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연습(리허설) 시간의 사용료는 50%를 할인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설치) ---------- ---------- ---------- ------ 별표 1--------.
제4조(체육시설 관리·운영)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관리·운영을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체육시설 관리·운영) ① 체육시설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 ①·② (생 략)	제5조(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용자가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권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③ ---------- ---------- ---------- 본다.
제6조(사용시간) ① (생 략)	제6조(사용시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예외로 한다.
2. 체육 경기 또는 행사에 관련된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를 사용시간으로 하며, 이 경우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시간은 주간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2. ---------- ----- 주간에 ---------- -.
<신 설>	③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사용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체육시설 또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사용허가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체육진흥을 위하여 마포구체육회 또는 마포구 생활체육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경기대	2. ---------- 마포구체육회 또는 마포구생활체육회- ----------

회 및 체육행사	--------
제8조(사용료 등)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며, 사용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 부터 “별표 4” 까지와 같다.	제8조(사용료 등) ① ---------- -------- 사용료는 원가·물가상승률 및 다른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때에는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 등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및 할증)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및 할증) ① ---------- -------.
1.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액, 이 경우 감액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만 적용한다.	1. ---------- 감면---- 감면 사유---------- ----------.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본인	가.---------- 경로우대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등록장애인 및 그 보호자 1명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명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본인	마.---------- -- 수급자
<신 설>	2. 사용료의 100분의 80 감면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2. 사용료 전액 면제 가. 국가, 서울특별시, 구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나. 마포구 체육회, 마포구	3. 사용료 전액 면제 : 국가, 서울특별시, 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생활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② 프로그램의 계절별, 시간대별 특징 또는 이용자의 월 2개 이상 프로그램 참여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분의 20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계절별·시간대별 취약 프로그램 이용자 2. 월 2개 이상 프로그램 이용자 3. 3개월 이상 프로그램을 등록하는 이용자
③ 토·일·공휴일 및 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다.	③ 토요일·공휴일 또는 야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운영의 위탁) ① (생 략)	제15조(운영의 위탁) (현행과 같음)
②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② ---------- 한 차례만 연장----------.
③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 하며, 위탁의 연장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수탁기관 선정 기준)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수탁기관 선정 기준) ① ---------- ---------- ---------- ---------- ---------- --.----- 서울특별시 마포구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되, 체육시설의 특성상 면허 또는 경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선정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체육시설 안의 세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1. 당연직 위원 : 소관국장 2. 마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4. (생 략) ③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체육시설업무 소관국장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3.·4. (현행과 같음) ③ ----------위원에게----------.
<신 설>	제17조의2(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심사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② 심사대상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본인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8조(시설물 등의 설치)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시설물 등의 설치) ---------- ---------- ---------- 새로-- - ---------- ---------- ----------.
제21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위탁의 취소) ①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수탁자의 재정상태 악화 등 그 밖의 사유로 체육시설에 대한 수탁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4. 수탁자의 사망 또는 수탁법인(단체)이 해산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신 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날짜를 취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수탁자에게 의견진

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

(제3조 관련)

(단위 : 원)

시설 명칭	시설 구분	기능	위치
염리 생활 체육관	종합 체육관	(생 략)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174-3
	다목적 체육실	(생 략)	
<신 설>			
망원동 테니스장		(생 략)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62-8 일대
와우산 배드민턴장		(생 략)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3-243 일대
망원동 배드민턴장		(생 략)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60-5 일대

[별표 2]

개인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단위 : 원)

시설 명칭	대상	사용료	연령 구분	비고
염리생활 체육관	성 인	30,000원 ~ 90,000원	만 19세 이상	※ 사용료 기준 : 1시간, 주1~5회, 1개월
	청소년	30,000원 ~ 60,000원	만 13세 ~ 만 18세	
	어린이	20,000원 ~ 50,000원	만 12세 이하	
<신 설>				

[별표 1]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

(제3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기능	위치
염리 생활 체육관	종합 체육관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61 (염리동)
	다목적 체육실	(현행과 같음)	
마포구민 체육센터	종합 체육관	농구, 배구, 배드민턴, 핸드볼 등 체육활동 및 행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11길 198(망원동)
	다목적 소체육관	요가, 체조,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등 체육활동	
	체력단련실	헬스, 체력단련장	
	볼링장	볼링	
망원동 테니스장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로 2(망원동)
와우산 배드민턴장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30길 87(창전동)
망원동 배드민턴장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길 39(망원동)

[별표 2]

개인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대상	사용료	비고
염리 생활 체육관	종합 체육관	성인	2,000 ~ 4,000	※ 사용료 기준 - 1회 2시간 - 월사용권은 1회 사용료에 20을 곱한 금액 한도 내로 함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마포 구민 체육 센터	종합 체육관	성인	2,000 ~ 4,000	※ 성인 만 19세 이상 청소년 만 13세 ~ 만 18세 어린이 만 12세 이하 ※ 개인사물함 대 : 5,000원 중 : 3,000원 소 : 2,000원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헬스장	성인	2,000 ~ 4,000	
		청소년	1,500 ~ 3,000	
	볼링장	성인	1게임당 2,500 ~ 4,500	
		청소년 어린이	1게임당 2,000 ~ 4,000	

망원동 테니스장	2,000원	- -	※ 사용료 기준 : 1시간, 면당
와우산 배드민턴장	2,000원	- -	
망원동 배드민턴장	2,000원	- -	
(생 략)			

[별표 3]

전용사용료(제8조 관련)

(단위 : 원)

시설 명칭	시설 구분	사용료		비고
		체육경기	일반행사	
염리 생활 체육관	종합 체육관	55,000원	80,000원	※ 사용료 기준 : 2시간, 부가가치세 별도
	다목적 체육실	15,000원	30,000원	
<신 설>				
망원동 테니스장		10,000원	-	※ 사용료 기준 : 1일, 면당
(생 략)				

[별표 4]

그 밖의 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단위 : 원)

시설 명칭	시설 구분	시설 사용료		비고
		음향장비	냉·난방	
염리 생활 체육관	종합 체육관	15,000원	30,000원	(생 략)
	다목적 체육실	10,000원	10,000원	
<신 설>				
(생 략)				

와우산 배드민턴장	2,000 ~ 4,000	※ 볼링화 대여 : 1,000원
망원동 배드민턴장	2,000 ~ 4,000	
망원동 테니스장	3,000 ~ 6,000	
(내용은 현행과 같음)		

[별표 3]

전용사용료(제8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사용료		비고
		체육경기	일반행사	
염리 생활 체육관	종합 체육관	55,000 ~ 100,000	80,000 ~ 160,000	
	다목적 체육실	15,000 ~ 40,000	30,000 ~ 60,000	
마포 구민 체육 센터	종합 체육관	100,000 ~ 200,000	200,000 ~ 40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삭 제>
	다목적 소체육관(大)	30,000 ~ 60,000	60,000 ~ 120,000	
	다목적 소체육관(中)	15,000 ~ 40,000	30,000 ~ 60,000	
	다목적 소체육관(小)	10,000 ~ 30,000	20,000 ~ 40,000	
	볼링장	(체육경기 시) 주중 : 30,000 ~ 50,000 토요일·공휴일 : 35,000 ~ 65,000		※ 사용료 기준 : 1시간, 1레인
망원동 테니스장		10,000 ~ 30,000	-	※ 사용료 기준 : 1일, 1면당
(현행과 같음)				

[별표 4]

그 밖의 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사용료		비고
		음향장비	냉난방	
염리 생활 체육관	종합 체육관	15,000 ~ 25,000	30,000 ~ 40,000	(내용은 현행과 같음)
	다목적 체육실	10,000 ~ 15,000	10,000 ~ 20,000	
마포 구민 체육 센터	종합 체육관	15,000 ~ 25,000	40,000 ~ 60,000	
	다목적 소체육관(大)	10,000 ~ 15,000	15,000 ~ 25,000	
	다목적 소체육관(中)	10,000 ~ 15,000	10,000 ~ 20,000	
	다목적 소체육관(小)	10,000 ~ 15,000	5,000 ~ 10,000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사용료 등)
   -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운영의 위탁)
2. 비용추계의 전제
   - 「마포구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연도별 소요예산 및 내역
   - 비용추계기간 : 2015. 7 ~ 2019. 12. 31(54개월)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체육시설대관료	20,970	44,037	46,134	48,231	50,328	209,700
	체육시설수강료	329,880	692,748	725,736	758,724	791,712	3,298,800
	시설이용료	507,150	1,065,015	1,115,730	1,166,445	1,217,160	5,071,500
	사물함사용료	4,860	10,206	10,692	11,178	11,664	48,600
	주차장이용료	9,720	20,412	21,384	22,356	23,328	97,200
	사무실임대료	28,000	58,800	61,600	64,400	67,200	280,000
	소계(a)	900,580	1,891,218	1,981,276	2,071,334	2,161,392	9,005,800
세출	인건비	279,950	571,098	582,296	593,494	604,692	2,631,530
	일반운영비	47,835	97,583	99,497	101,410	103,324	449,649
	복리후생비	29,241	59,652	60,821	61,991	63,161	274,865
	교육훈련비 (방화관리,전기 안전교육등)	688	1,403	1,430	1,458	1,485	6,463
	수선유지비	9,403	19,182	19,558	19,934	20,310	88,388
	동력비	216,000	440,640	449,280	457,920	466,560	2,030,400
	위탁관리비 지급수수료	6,135	12,515	12,761	13,006	13,252	57,669
	프로그램강사료	185,676	378,779	386,206	393,633	401,060	1,745,354
	소계(b)	774,928	1,580,852	1,611,849	1,642,846	1,673,843	7,284,319
총비용(a-b)		125,652	310,366	369,427	428,488	487,549	1,721,482

4. 재원조달 방안
   - 시설 운영에 따른 세입으로 조달하고자 함.
5. 덧붙이는 의견 : **구체적인 세입 및 세출은 차후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안전행정국 생활체육과 안주현
연 락 처	02-3153-9852